

대학교회 규정

(제정 1993. 9.14.)

제1조(목적과 위치) 전주대학교 대학교회(이하 “대학교회”라 한다)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대학 내·외의 선교와 봉사를 목적으로 하며 전주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조(담임목사의 청빙과 임직) 담임목사의 청빙은 대학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교봉사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1.>

제3조(선교봉사처장의 교회에 대한 책무) 선교봉사처장은 대학교회를 지원하고, 담임목사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4.1.1.>

제4조(대학교회 내규) 기타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들은 교회가 성경의 원리 안에 정하는 대학교회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.

제5조(사회사업) ① 대학교회에서는 선교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대학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③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본조신설 2009.12.1>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5-2-2-2 대학교회 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